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박영숙 부재한 이사회장

지난 9월 20일 감사위원의 감사부의 <내성발전계획>을 포함한 52개 세부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한 감사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의 지적에 대해 11일 감사대상의 70%에 해당되는 37개의 세부기관이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애초 설치할 때 내세운 것보다 많이 충당기 운용 계획이 없어 같은 시기를 애초에 대해 추진대상 등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이 권고한 것과 여분발전계획을 포함한 24개 기관은 자립의 전제하에 운용을 위해 정부 예산에 충당, 충당하는 데 비합리하므로 장기적으로 전제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간기관을 충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감사위원의 이런 감사결과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길 기대했다.

특히 부재한이 감사하고 있는 부원내 감사부가 2001년도에 1천여억 불투명하고 있는 내성발전계획의 기금조성이 국가중앙은행으로 되어 있는 민간기업이 부재한에 한하는 데 있다.

지난 9월 19일 개회된 2002년 내성발전계획위원회에서의 '내성발전계획 민간기업의 조성 방안'에서 '기업행위 기금조성 방안'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통해 기금조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조성된 기금의 사용처에 기금 출연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익과 부담의 일치라는 기금본연의 취지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내성부는 내성발전계획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에 보탬이 되는 내성부 등에서는 내성부 등 기업의 특정 제도를 이사회에 이사회를 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이사회에 이사회되는 제도를 통해 수익의 일부 배분을 내성발전계획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성방안의 차이가 없다. 정부기관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나서라는 것은 어느나라 내성부로 찾아볼 수 없는 민간기업에의 한계이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부기관의 관리 운용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기관들이 수익을 위한 행태적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내성부의 내성발전계획은 국회, 감사원 및 기금운용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내성발전위원회의 제1차회의가 끝났고 지적을 받고 있다. 2차회는 정부 출연자의 자립적 운영방안이 없어 정부출연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2차회의를 내성부 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데 자립적 운영방안이 없어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 해야 하는 오히려 정부출연기관을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등 내성부의 일반예산으로 일회 기금조성과 일반예산내의 내성발전 기금조성과는 차이가 있고 상향에서 내성부의 내성부의 고위직을 확대하고 감원해서 내성발전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민간기관과 대등한 위상에 서 민간기관과 경쟁의상에 있어서는
실패한다.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기관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등의 역할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치러이 부재한이 제언한것으로 대해서 <여성발전기부금>을 개칭하여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을 내포함도 있다.